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59
----------	------

2016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6년 10월 31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03일
- 라. 상정결과 :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12월 6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출연 대상기관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1) 위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2) 규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 전용면적 396.6㎡)
  - 3)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출연기관)
  - 4)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5) 주요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2)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부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부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특별시는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민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Public Access)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의 20%(2016년 예산 6천6백만원)를 부담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2017회계연도에 앞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존 보조금 교부 방식을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제5조제1항제2조의 조항을 근거로 ‘출연금’으로 변경하고자 함.

**방 송 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 개관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회원 등록을 통해 미디어체험, 미디어강좌수강, 장비대여, 시설이용 및 라이브방송 등을 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강좌는 교육부 선정 ‘자유학기제 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2016년 10월까지 총 203개의 강좌를 통해 38,693명이 미디어교육을 받는 등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평가됨.

DSLR, 4K비디오레코더 및 전문 미디어 장비대여 또한 대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장애인·다문화가정·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복지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므로 시설이전 및 장비보유 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 2017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에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계정이 변경되어 전년대비 27.8%인 1천8백만원이 증액된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운영비의 20%를 분담한다는 협약만 맺어있을 뿐, 기간 및 정해진 액수를 출연한다는 것은 아니어서 센터의 운영방향 변화에 따라 향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 2017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A)	2017(안)(B)	증감(B-A)	(B-A)/A
계		66,000	84,325	18,325	27.8%
출연금		-	84,325	84,32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6,000	-	△66,000	△100%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의해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반면, 출연금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으므로 변경 동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 방 재 정 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방송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도 운영비를 해당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므로 변경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459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기관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1) 위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2) 규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 전용면적 396.6㎡)
- 3)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출연기관)
- 4)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5) 주요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나.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김지안(☎2133-2530)